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또는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제품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고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재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보호에 기여

○ 추진 체계

-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재난안전사업팀)

○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 신청자격 및 대상제품

- (신청자격)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직접 개발한 제품 외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제품 포함

- (대상제품) ①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18.1.1~'22.12.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

②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

※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어야 함

3. 지정 절차

구 분	주 체	세 부 내 용	일정
제 품 등 록	신 청 인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 www.g2b.go.kr) ○ 세부품명 제조등록(목록정보시스템 / www.g2b.go.kr:8053) ○ 물품목록번호 등록(목록정보시스템 / www.g2b.go.kr:8053)	~10.27.
제 품 신 청	신 청 인	○ 신청서·첨부서류 업로드 (산업기술R&D정보포털 / itech.keit.re.kr)	~10.27.
제 품 평 가	평 가 기 관	○ 신청서·첨부서류 검토 및 보완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종합심사 → 이의신청	11월
심의예정공고	행정안전부	○ 혁신제품 지정 심의 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0일 이상)	12월
심 의 · 의 결	기획재정부	○ 조달청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심의·의결 ○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정보 통보(행정안전부 → 조달청)	12월

※ 지정 절차의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4. 제품등록

- 공공기관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위해 신청인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이용자 등록
-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신청 제품이 여러 품목으로 구성된 경우 하나의 통합된 세부품명으로 등록
 - ※ 품명등록 과정 중 융·복합품명 등록하는 경우, 비교란에 ‘혁신제품 신청용’이란 문구를 반드시 기재
-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제품의 물품목록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선택한 세부품명번호와 신청제품 일치해야 함
 - ※ 품목등록 과정 중 활용구분에 ‘혁신제품 신청용’으로 선택

[참고 1]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등록)’ 참고

[참고 2]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등록)’ 참고

5. 제품신청

- 신청기간 : 2023. 10. 23.(월) 09:00 ~ 2023. 10. 27.(금) 18:00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 접속 후 신청

구 분	산업기술R&D정보포털시스템 신청 세부 절차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접속 후 내용 입력 및 서류 등록 ○ 포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 신청인(기업) 정보 입력 및 작성된 서류 업로드(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난안전사업팀 053-718-8289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구분	비 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 1
혁신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 2
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 자료(기술이전을 받은 경우 그 증빙자료 포함)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필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제품 규격서, 자기점검표 포함)	필수	서식 3~5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등의 자료	해당시	

[서식 1]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작성·제출

[서식 2] ‘혁신제품 설명서’ 작성·제출

[서식 3]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서식 4] ‘제품 규격서’ 작성·제출

[서식 5] ‘자기점검표’ 작성·제출

6. 제품평가 및 지정

○ 사전검토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반려

○ 서류평가(1차)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에 대해 先 공공성평가, 後 혁신성평가 시행(공공성 적합 제품만 혁신성 평가)

- 공공성평가의 각 항목별로 참석위원의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격,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탈락

(평가항목)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적부), 공공구매 필요성(적부), 현안의 시급성(적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적부), 개발완성 수준(적부)

- 참석위원의 혁신성평가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 합격

(평가항목) 제품의 신규성(25), 제품의 탁월성(25),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20), 기대 시장규모(15), 타 산업 파급성(15)

○ 현장평가(2차)

- 평가위원 중에서 현장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1차 서류평가 결과의 현장 확인과 제품의 기술, 생산, 성능 등 확인
- 참석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

(평가항목) 제품의 확인, 핵심기술 적용여부,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제품의 성능 확인, 기타 증빙서류 확인

○ 종합심사(3차)

- 종합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후 1차, 2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개발 내용, 핵심성능 등 확인
- 참석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

○ 이의신청

-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 평가위원회 구성 후 참석한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찬성(이의 인정)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종합심사 합격)으로 인정

○ 조달적합성 검토(제품평가와 별도로 진행)

- 조달 물품 판매를 위한 제조·공급 여부, 법정 의무인증 획득, 적정 규격서 구비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연구원)
- 조달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탈락

○ 심의예정공고

- 종합심사에 합격(이의 인정 제품 포함)하고, 조달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을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 공고(20일 이상)
- 공고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후 참석한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탈락

○ 심의·의결

- 심의예정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수용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안전 상정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 혁신장터 등록

-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혁신장터를 통해 인쇄, 다운로드 가능)
- 조달청 안내에 따라 혁신장터에 통해 물품등록 신청

7. 문의

기 관 명	연락처	비고
행정안전부	044-205-6232	제도, 세부 운영절차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89	일정, 시스템 사용법 등 문의

※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